

# 03

## 레저세

※ 마권세('61) → 경주·마권세('94, 경륜·경정 추가) → 레저세('02, 소싸움 경기 추가)

### ○ 과세대상

- 경륜 및 경정, 경마, 전통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

※ 사업장 분포 : 경마(과천, 부산경남, 제주, 장외 29개소), 경륜(부산, 창원, 광명, 장외 20개소), 경정(하남, 장외 18개소), 소싸움경기(청도)

### ○ 납세의무자 :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

- 한국마사회(경마), 국민체육진흥공단·부산지방공단·창원경륜공단(경륜), 국민체육진흥공단(경정), 청도공영사업공사(소싸움)

### ○ 납부 및 납기

- **납부** :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
  - (본장)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
  - (장외발매소)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%씩 각각 신고·납부  
다만, 본장이 신설될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% 신고·납부
- **납기** : 승자·승마·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납부

### ○ 과표 및 세율

- 승자투표권·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

※ 투표권 발매가액의 10% 부과되며,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

#### ┃ 경마 총매출액 구성비 및 특별적립금 출연 현황 ┃

매출액	100%	<b>이익금(4%)</b>		
환급금	73%	특별적립금 (70%)	사업확장 적립금 (20%)	이익준비금 (10%)
레저세 · 본세 10% · 교육세 4% · 농특세 2%	16%			
비용	7%	① 출산발전기금(92%)		
이익금	4%	② 공익기부금(8%)		